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해양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전담수사에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 및 강릉·양양 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및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을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전라남도 목포시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별표 4 중 총 계 “515”을 “518”으로, 경찰공무원 계 “417”을 “418”로 총 경 이하 “408”를 “409”로, 일반직 계 “98”을 “10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97”을 “99”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12,660”을 “12,698”으로, 경찰공무원 계 “11,462”을 “11,500”로, 총경 이하 “11,453”를 “11,491”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1. 해양오염방제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1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2]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2,686
경찰공무원 계	11,488
치안정감	1
치안감	3
경무관	5
총경 이하	11,479
일반직 계	1,198
3급 또는 4급 이하	1,183
전문경력관	1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u>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u> 를 둔다.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 ----- ----- <u>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u> 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u>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u> ----- -----.
④ <u>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u> 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u>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u>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5</u>	<u>518</u>	+3
경찰공무원 계	<u>417</u>	<u>418</u>	+1
·	·	·	
·	·	·	
총경 이하	<u>408</u>	<u>409</u>	+1
일반직 계	<u>98</u>	<u>10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7</u>	<u>99</u>	+2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660</u>	<u>12,698</u>	+38
경찰공무원 계	<u>11,462</u>	<u>11,500</u>	+38
·	·	·	
·	·	·	
총경 이하	<u>11,453</u>	<u>11,491</u>	+38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